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 >
■ 각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03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영 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	2
※ 참고자료	6
□ 인구감소지역 개요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광규택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2026. 7. 30.

다. 회 부 일: 2026.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6조(재정지원) ① ----- ----- ----- ----- ---.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를 숙박·음식·운송·문화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²⁾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에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및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 분야 보조사업을 실시하

1)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 18. (생략)

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지역 내 소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³⁾에 국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 ②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급 여부는 인구 규모, 재정자립도, 관광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보조금 우선 지급 대상 중 하나로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⁴⁾ 등으로 자구를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4) 참고 입법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부문 지원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근거를 두기보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기획예산처는 국비 지원의 경우 국가 전체적인 우선순위 등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 ④ (생략)

※ 참고자료

□ 인구감소지역 개요

- **인구감소지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전체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를 통해 지정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위 치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